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

2022.11.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7월 4일, 최호정 의원 외 75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보류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6.) 공청회 개최의 건 상정, 공청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최호정 의원)

1. 제안이유

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폐지조례안의 개요

○ 동 폐지조례안은 2020년 2월부터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인 미디어재단TBS의 설립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민간 재단으로 독립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음.

○ 동 안건을 발의한 최호정 의원 외 76명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1],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재단TBS의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하였음.

나. 미디어재단TBS 현황

1) 일반현황

○ 미디어재단TBS는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 위치(스마티움 1~7층, 11~14층, 지하 1・5・6층)하고 있으며, TBS FM, TBS eFM, TBS TV 및 다양한 방송플랫폼을 통해 음성・영상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

1)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22.1.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미디어 환경 변화로 TV·라디오 등 전통매체 이용은 매년 감소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정보를 습득하는 추세(일상생활 필수매체: 스마트폰(70.3%)>TV(27.1%)>데스크톱(1.6%)>라디오(0.2%))이며, 서울시민 교통정보 획득 수단 연구('21.7.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정보 역시 라디오보다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이용(74.2%)하고, 신뢰도 부문에서도 라디오(7.4%)보다 우위(53.9%)에 있음.

〈 미디어재단TBS 주요 방송매체 현황 〉

방송국명	사업자지위	허가사항	비고
교통FM방송국 (TBS FM)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 상업광고방송 제외 - 방송재허가: 4년 ('20.12.18.~'24.12.31.)	·호출부호: HLST-FM ·주파수: 95.1Mhz ·주요 프로그램 -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빌리티 토크쇼 - 9595쇼 - 허리케인 라디오
영어FM방송국 (TBS eFM)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영어를 주된 언어로 하는 다국어 방송 전반 및 광고방송** - 방송재허가: 4년 ('20.12.18.~'24.12.31.)	·호출부호: HLSㅉ-FM ·주파수: 101.3Mhz ·주요 프로그램 - This Morning - Life: Abroad - Diverse Voices
TBS 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등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사항 : 지방자치정보** - 방송운용개시일: '05.03.01. - 등록변경: '20.12.14.	·방송매체 - IPTV:KTollehtv, Btv, U+TV - 케이블TV: 86개 SO ·인터넷(실시간, VOD, AOD 등) - 유튜브, TBS앱 등 - 팟빵(팟캐스트) - Wavve - ODK - 삼성TV플러스

○ 조직은 2실 5본부 29팀으로 인력은 정원 398명 현원 354명이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465억원으로 이중 서울시 출연금의 규모는 3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8%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도 미디어재단TBS 예산 〉

세입예산		세출예산		
합계	46,500,000	합계		46,500,000
자체수입	1,000,000	사업비		16,985,890
출연금 (전입금포함)	32,000,000	행정운영경비		29,514,110
			인건비	23,360,897
			경비	6,153,213
순세계잉여금	4,500,000	예비비		-

〈 미디어재단TBS 조직과 인력 규모 〉

조 직 : 2실 5본부 29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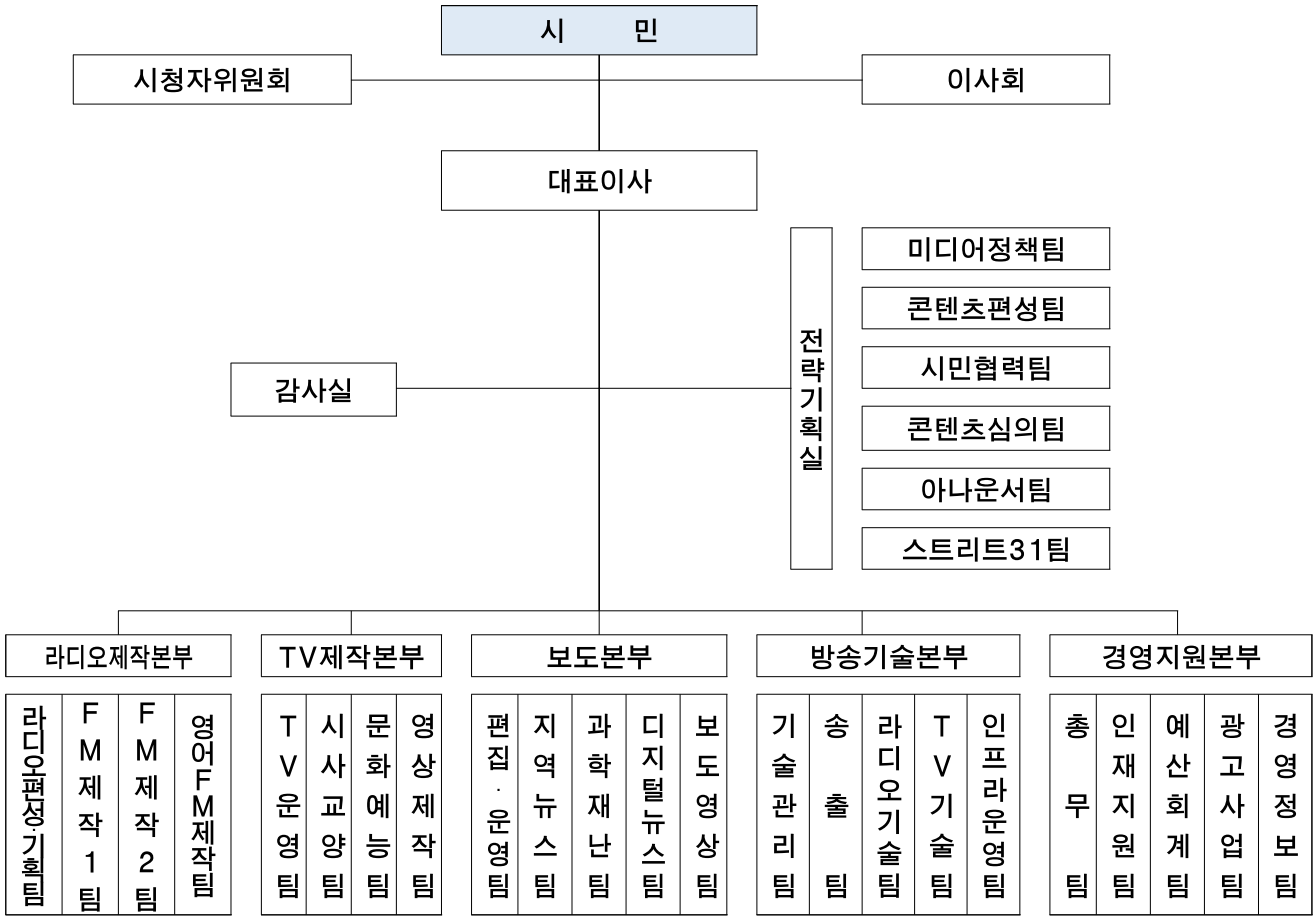

인 력

☐ **정원 398명 / 현원 354명** ('22. 9. 1. 기준)

구 분	계	대표이사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관리운영직
정 원	398	1	28	52	53	76	179	9
현 원	354	1	22	48	53	50	174	6
과부족	△44	0	△6	△4	0	△26	△5	△3

※ 서울시 파견공무원(2명), 기간제 직원(23명), 프리랜서(38명) 제외

○ 한편 미디어재단TBS의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출연금(2021년도 출연금 365억 5천6백만원)을 포함한 사업수익은 475억 7천만원이고, 사업비용은 500억 2천3백만원임.

〈 미디어재단TBS 2021회계연도 결산서 〉

1. 사 업 개 시(설립)년 월 일		2020. 2. 17.			
2. 출자출연기관 적용년월일		2020. 2. 17.			
3. 대표이사(이 사 장)		이 강 택			
구 분 \ 연 도 별		2021(당기)		전기 실적 (B)	증감 (A-B)
		목 표	실적(A)		
4. 사업수입 (단위 : 원)	계	49,343,072,000	47,570,320,013	59,224,699,525	-11,654,379,512
	출 연 금 수 입	37,517,981,000	36,555,771,000	34,761,547,000	1,794,224,000
	사 업 운 영 수 입	10,500,000,000	9,035,346,749	10,000,931,347	-965,584,598
	보 조 금 수 입	1,325,091,000	1,057,527,227	1,367,468,100	-309,940,873
	기 타 영 업 수 입	-	808,606,966	632,607,426	175,999,540
	기타영업외수입	-	113,068,071	12,462,145,652	-12,349,077,581

※ 당기 실적(A)의 경우 재무결산액 반영

2) 미디어재단TBS 설립 과정

○ 미디어재단TBS는 1990년 6월 11일 교통 FM 라디오방송국인 ‘tbs FM’(95.1Mhz)을 개국하여 서울시 사업소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3월 케이블TV 채널 ‘TV서울(2006년 tbs TV로 개명)’, 2008년 12월 한국 최초 영어 FM 라디오 방송국 ‘tbs eFM’(101.3Mhz)을 출범시켰고, 2020년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였음.

○ 서울시는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고, tbs교통방송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였음.

○ 이후 2016년 제36대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이 수립되면서 서울시 및 관계기관 계약직·청소용역과 120다산콜재단, tbs교통방송 프리랜서[2]의 정규직화가 추진되면서 tbs교통방송의 출연기관 전환 문제가 대두되었음.

○ 서울시는 tbs교통방송의 출연기관 전환을 위해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되,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밝혔음.

○ 재단 전환 당시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분류되는 TBS FM, TBS eFM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변경허가 심사를 받았으며, TBS 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등록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10월 미디어재단T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를 심사한 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2) 우리나라 방송업계의 경우 외주제작 비율이 높음에 따라 기자, 리포터, 작가 및 PD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tbs교통방송도 마찬가지로 28명의 정규직을 제외한 420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음(2018.12.기준)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받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하였음.

○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도 권고받은 바 있음.

○ 한편 2019년 6월 서울시 사업소인 tbs교통방송을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TBS로 전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① 재단의 공공성·독립성 강화, ②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확보 필요, ③ 부족한 비용편익 비율 개선, ④ 부족한 조직 및 인력계획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음.

○ 그 외에도 △낮은 시청율 및 인지도 개선,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음.

다. 안건의 주요 쟁점

1) 의안의 성립 여부

○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TBS의 설립·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76명이 공동발의하였음.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예산안, 결산의 발의, 선결처분의 승인발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3],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전적 개입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4].

○ 그러나 미디어재단TBS는 「민법」 제32조[5]에 따른 재단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6]에 해당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34조

---

3)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198p, 서울특별시의회

4)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추48 판결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7]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기구’는 아니므로 폐지조례안의 발의가 시장의 전속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미디어재단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8]는 출연금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폐지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대구시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공공기관을 10곳으로 통폐합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구문화재단,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6개의 기관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처리(2022.7.22. 원안가결)된 바 있음.

2) 방송의 공적 책임 논란

○ 전세계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주파수 제약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스 미디어로서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방송법」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명시하고 있음.

---

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명시함으로 방송사업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TBS FM과 eFM의 경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관점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임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9]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음[10].

〈 방송통신위원회 등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현황 〉

구분	합계	2021	2020	2019
합계	54건	35건	9건	10건
법정제재	6건	1건	1건	4건
행정지도	48건	34건	8건	6건

○ 또한 2022년 3월부터 실시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11]에 따르면, 미디어재단TBS의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중 83%가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고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사유[12]에 따라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통보하였음.

---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0) 2020년 2월, 미디어재단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전환 이후 2022년 6월까지의 법정제재는 총 5건임.

1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기관운영 감사(2022.3~6.)는 현재 미디어재단TBS의 재심의신청으로 인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음. 해당 내용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임.

12) 2020년 2월(재단설립)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중 6건에 대해 자체 방송심의회 심의 등 후속조치가 없음.

○ 한편, TBS TV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지방자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등록’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보다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보도’ 기능이 일부 포함[13]되어 편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다수 언론의 지적이 있음.

3) 미디어재단TBS의 법적 지위

○ 미디어재단TBS는 국가의 주무부처와 허가·승인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지위가 내제되어 있음.

○ 우선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속으로 「민법」 제32조[14]에 따른 재단법인이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15]에 해당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

13)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 4개와 보도전문채널 2개 등 총 6개에 불과함.

1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또한 라디오방송인 TBS FM과 eFM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공재인 전파 사용을 허가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며, TV방송인 TBS TV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어 다양한 법적 지위에 따라 미디어재단TBS[16]는 다소 혼란스러운 운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논란이 있는 방송출연자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디어재단TBS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위를 근거로 권고사항임[17]을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방송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을 탈피하고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 프로그램 및 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TBS FM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FM방송국”을 방송국명으로 하여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받은 바 일부 시사교양프로그램[18] 편성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16) TBS FM, eFM, TV에 대한 허가, 등록사항은 3페이지 표 및 붙임자료 참고

17) 미디어재단TBS 대표이사는 제311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1년 7월부터 미디어재단TBS가 서면계약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EBS, KBS보다는 더 빨리 실시하였고, 아직까지도 상업방송사의 대부분은 서면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힘.

18) “시사교양프로그램”은 미디어재단TBS가 분류한 카테고리임.

대한 논란[19]도 존재하고 있음.

○ 미디어재단TBS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 편성이 「방송법」 상 위반사항이 없음을 주장해왔으며, 일각에서는 폐지조례안의 발의가 동 프로그램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내지는 기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간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 그러나 동 폐지조례안은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된 바, 특정 프로그램의 변경·폐지 등과 같은 규제가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20].

○ 또한 미디어재단TBS는 2022년도 서울시 출연금이 재단 예상보다 적어 하반기 제작비 부족이 발생하고, 폐지조례안의 발의로 재단 존폐위기가 발생하자 8월 15일부터 유튜브 멤버십 유료구독 ‘티어로(TBS를 지키는 히어로)’를 모집하고 있음.

---

19) 2017.10.13.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TBS FM의 시사, 보도프로그램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20) 폐지조례안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재단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정 프로그램의 존치 여부는 서울시의 소관을 벗어남.

○ 그러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는 미디어재단TBS가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멤버십 유료구독을 통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공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미디어재단 TBS의 법적 지위, 매체별에 따른 혼란스러운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음.

4) 재정적 독립 경영

○ 미디어재단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전환 당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의회로부터 서울시 책임운영기관보다 더욱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를 진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독립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권고받은 바, 현재처럼 3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미디어재단TBS는 2018년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을 수립하였는데, 행정안전부 및 우리 위원회에 재정자립도 개선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을 득하기 위해 노력[21] 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상업광고 시장이

21)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FM 상업광고에 대해 불허하고 있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형태와 ② 미디어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것이며, 향후 재단법인 전환 이후에는 명분이 약화되어 상업광고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급격히 축소(2012년 2조 1,830억원→2020년 9,957억원)되었고, 이에 따라 상업광고의 신규 진입을 저지하는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은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미디어재단TBS의 매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TBS FM이 현재 상업광고 대신 공공협찬을 받고 있으므로 상업광고 허용이 반드시 미디어재단TBS 재원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처럼 특정 프로그램에 재원을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미디어재단 TBS 모든 매체의 전반적인 킬러콘텐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음.

5) 안 부칙 내용의 타당성

○ 안 부칙 제2조는 미디어재단TBS의 소속된 정규직·계약직 직원이 폐지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신분·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으로 현 근로자들의 구제책으로 보여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 칙

제2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재단)에 소속된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이 희망하는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실설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미디어재단TBS는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전환 협의를 위해 “(가칭)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계획(안)” 을 수립한 바, 당시 서울시 사업소 tbs교통방송의 인력은 비정규직 비율이 절대 다수였고, 재단법인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재단전후 인력규모 변화 〉

tbs교통방송(사업소) 2018.6.		
정규직 (28명)	일반직	16명
	공무직	12명
비정규직 (420명)	임기제	148명
	프리랜서	185명
	파견용역	87명

(가칭)tbs방송재단(계획안) 2019(안)		
정규직 (357명)	방송제작	200명
	제작지원 /작가	117명
	행정/지원	28명
	청경/운전	12명
비정규직 (91명)	계약직 (작가)	78명
	프리랜서	13명

미디어재단TBS(출연기관) 2022.9.		
정규직 (354명)	방송제작	234명
	제작지원 /작가	57명
	행정/지원	57명
	청경/운전	6명
비정규직 (61명)	계약직	23명
	프리랜서	38명

○ 2022년 현재 미디어재단TBS 조직은 정규직 354명, 기간제 61명으로 2018년 계획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행정·지원 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재단법인화의 가장 큰 명목이었던 제작지원·작가는 절반에 못미치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TBS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안 부칙 제2조는 폐지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단 출연금 근거규정이 없어질 경우 대량 해고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제한·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미디어재단 TBS 소속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 채용 규정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안 부칙 제3조의 경우 폐지조례안 시행 전 미디어재단TBS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의 권한을 서울시장과 재단에 부여하는 것으로, 미디어재단 TBS가 서울시 사업소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며 이관된 서울시의 자산 중 일부를 상호합의하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 칙

제3조(자산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2020년 2월, 미디어재단TBS 출범 당시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자산은 총 124억 4천만원으로 모두 유형자산(비유동자산)에 해당하며, 2021 회계연도 미디어재단TBS 결산서 재무재표에 따른 재단의 현 자산은 157억 5천5백만원[22]으로 유동자산 64억 6천6백만원, 비유동자산(투자·유형·무형자산) 92억 8천8백만원임.

22) 이에 따른 부채 및 순자산 총계도 동일하며, 부채는 12억 4천2백만원, 순자산은 145억 1천2백만원(기본자산 1백만원 포함)임.

○ 동 안건 시행의 경우 안 부칙 제1조에 의해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운영이 가능하며, 「민법」 제43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에 대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디어재단TBS 정관」의 재산처분 관련 규정이 중요하다 하겠음.

○ 「미디어재단TBS 정관」 제33조제1항은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본재산 변경 시 최종 시장 승인을 받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전체 자산 정리에 대한 권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동 폐지조례안 부칙 제3조는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자산 정리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는 자산의 변경·집행·동결·매각 등 재단법인에 법적으로 전속된 사항들은 해당될 수 없고, 출연 자산에 대한 파악, 법률검토, 자산 정리에 대한 협의체 구성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은 곤란하다 하겠음.

라. 종합의견

○ 결론적으로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및 심사처리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칙의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규정은 법리적 논쟁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음.

○ 또한 동 폐지조례안의 시행은 향후 미디어재단TBS가 더이상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디어재단TBS의 공적 역할, △현재까지 투입된 서울시의 행정력과 재원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민선8기 현 서울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TBS FM에 대한 교육방송 전환을 시사하였으나, 미디어재단TBS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민선8기 서울시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폐지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위 철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 허가는 상당한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향후 미디어재단TBS의 민간 전환 혹은 해산 등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정확한 입장[23]도 하루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3)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서울시장 발언 : “교통방송으로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을 해서 …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함”, “(저는) 단 한 번도 (미디어재단TBS에 대해) 예산을 전액삭감한다고 발언한 적은 없음”, “(폐지조례안은) 저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폐지조례안 시행일 이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인적·물적 재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가.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제1조).

나.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 폐지조례안은 헌법상 평등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미디어재단TBS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원을 끊는 방식이 아닌 시민 수요조사 등을 통한 기능 재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1 **2018.12. 행정안전부 심의결과(미디어재단TBS 설립)**

〈 행정안전부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협의 심의결과」 〉

구분	분야별 검토	세부 검토의견
1	대상사업의 적정성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제1호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에 관련된 사업
2	대상사업의 경제성	·B/C 0.52로 경제성이 없어 파급효과 등 추가검토 필요
3	지역여건 및 정부시책 부합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방송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면 부합되는 것으로 보임
4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단설립을 통해 자체수입원 확보 노력은 보이나, 지자체 출연금이 소요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이라는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해 보임
5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타 산업대비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는 높지만 독립재단 설립에 따라 발생하는 순효과는 아니며,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에 따른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할 필요
6	조직 및 인력계획	·정규직의 대폭 증가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과 함께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
7	사업의 중복성	·서울시의 사업소를 출연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복성 여지는 작을 것으로 추정됨
8	지역의견 수용성	·기존의 서울시 사업소 조직으로 운영할 때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지역의견수렴을 반영한 설립 정당성 등 확보 필요
9	재심의 보완에 대한 검토의견	·재심의시 보완요청 사항에대해 일정부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재단설립시 제시한 보완사항이 실현가능하도록 세부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비용-효과분석(E/C) 등 추가검토 필요
종합의견		○ tbs교통방송의 출연재단을 협의하되,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 - 재단으로 독립법인화 하더라도 재원의 과도한 서울시 의존은 실질적 독립화에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에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출연기관 설립을 추진

붙임2 **2020.1.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TBS FM, eFM)**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수신 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 알림

1. 관 련

가.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 등)

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기획조정실-12269(2019.10.3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

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허가에 관한 건(2019.12.26., 방송통신위원회 제65차 의결)

2. 위 관련, 서울특별시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허가일자 : 2019.12.26

나. 변경허가 결과

- (변경허가 조건)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허가사항(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변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을 것

- (권고사항)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재정운영 심의기구를 설치할 것

- 교통 FM의 방송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방송광고 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한다. 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지상파방송정책과-34 (2020.01.03.) 접수 기획조정실-140 (2020.1.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 www.kcc.go.kr

전화 02-2110-1427 /전송 02-2110-0136 / ssh0530@kcc.go.kr / 비공개(5,7)

붙임3 **2020.12.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TBS FM, eFM)**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TBS)

1. 평가점수 및 허가유효기간

구분	방송사업자명	방송국명	평가점수	허가유효기간
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방송국	693.98	2024.12.31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영어FM방송국	681.05	2024.12.31

2. 재허가 조건

구분	재허가 조건
방송사업자	ㅇ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재허가 심사시 제출된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ㅇ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ㅇ 독립법인 출범 관련 '19년 변경허가 조건에 따라 '20.6월 제출한 변경허가 조건 이행계획을 준수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ㅇ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운영실적(미개최시 사유 포함)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ㅇ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각 방송사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에 반영할 것

구분	재허가 조건
라디오 방송국	o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o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o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o 국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3. 권고사항

구분	권고사항
방송사업자	o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윤리강령(외부인사를 포함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내실화 방안, 위반시 제재절차 등 포함) 등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하고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할 것 o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를 준수할 것 o 시청자들의 방송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불만 제기 시 방송사의 처리절차,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 후 시행할 것 o 협찬 운영 시 매출액 대비 적정 비율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것 o '19년 변경허가 시 권고사항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재정투명성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운영하여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o 개인정보보호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내용을 제작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o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직접수신 활성화를 위한 계획(홍보, 민원처리방안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붙임4 **202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증(TBS TV)**

등록번호 제 2005-1-3 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법인명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법인등록번호	270122-0059996
			사업자등록번호	829-82-00367
대표자		이강택	생년월일	1962-02-09
편성책임자		김경헌	생년월일	1972-11-10
최다액출자자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PLEXCENTER S동 (상암동)		
	주전송장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상암동)		
방송개요	방송유형	TV	방송분야	지방자치정보
	채널명	티비에스 티브이(tbs TV)	등록조건	
운용개시(예정)일		2005년 03월 01일	최초 등록일	2005년 01월 07일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인정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붙임5 2022.9.26. 미디어재단TBS 폐지조례안 공청회 요약보고

미디어재단TBS 폐지조례안 공청회 요약보고

▢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22. 9. 26(월) 10:00

※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로 개최

○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4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

○ 진 술 인 : 4명

- **강병호**(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조성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참　　석 :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11여명

- 시의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9명
- 서울시 : 홍보기획관, 공기업담당관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진행순서(안)

구 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 **개회 및 인사말씀** -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참석자 소개	▸ **참석자 소개** - 진술인(4명) - 최원석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 권소현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위원장
진술인 의견	▸ **진술인 진술 (4명, 28분)** -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진술 1인 7분 이내
집행기관 의견	▸ **집행기관 의견청취 (4분)** - 최원석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질의 · 답변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60분)**	1인 5분 이내 (추가질의 5분)
폐회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 진술인 주요 의견

○ **강병호**(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TBS는 △과도한 중앙정치 중독, △선거중독,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독으로 인해 수년간 조직문화가 훼손되어 왔으므로 'TBS 지원 중단' 조례는 변화와 혁신 거부에 대한 반작용임.

○ **조성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TBS의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이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도시의 공영방송은 존재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산의 70% 가까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유래를 찾기 어려우므로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임.

○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사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요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폐지조례안의 처리보다는 지역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시의회의 논의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 더 이상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TBS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고, 만약 공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라면 T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임.

- TBS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재단화 초기단계부터 계획했던 '시민거버넌스'를 통한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며, 경영진·이사회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공감함.

□ **집행부 주요 의견**

○ **홍보기획관 최원석**

-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최선을 다해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음.
- 다만 부칙안 제2조 및 제3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논의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주요 의견**

○ **김원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2)

-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재단TBS는 법정 행정지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적시되어 있어 홍보기획관은 TBS가 후속조치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선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

-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내용 중 '해산'이라는 단어는 부재하나 사실상 해산 혹은 폐업을 강제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더 좋은 TBS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함.

- 재단 설립 당시 서울시는 TBS에 10년간 매년 300억 이상의 재원을 출연하기로 계획한 바 정책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김규남 위원**(국민의힘, 송파1)

- 언론의 자유실현이라는 명목하에 시민의 공적의견을 외면하고 정치 공방의 장을 만드는 등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출연기관으로 공공성·책무성을 다하지 못하고 부실경영, 방만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
- TBS의 주요 역할인 교통안내 제공은 존재가치가 사라졌고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중앙정치, 거대담론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상실됨.

○ **문성호 위원**(국민의힘, 서대문2)

- 미디어재단TBS는 법정 제재,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운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TBS의 기록물·자료 보존행태가 부적절하고, 계약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적인 문제가 심각함.
- 미디어재단TBS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내 운영되고 있는 5개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종배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재단 설립 시 재정적 독립을 통해 정치적인 독립성을 이루겠다고 밝힌 계획에 따라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을 통해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함.
- 폐지조례안 발의는 반복적으로 거짓·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송을 중단시키며, 교통안내수요의 급격한 변화와 티비에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는 티비에스에 대한 합법적이고 적절한 권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77건의 제재와 이에 따른 서울시 감사위원회 경고,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언론윤리의식을 방치할 수 없으며, 경영상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라도 폐지조례안은 불가피한 조치임.

○ **이효원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자율성, 독립성에 따르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며 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2019년)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제출도 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정은 방송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전면도전으로 적절치 않음.

○ **아이수루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이주민 출신 서울시의원으로서 TBS eFM의 정보청취 취약계층의 시정정보 제공 등 사회적 공적 역할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시 출연금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7월 04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하여 티비에스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재단)에 소속된 직원(계약직 직원을 포함한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산 등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